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학술활동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3. 학술지 발간 4.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5.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6.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3.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p>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p> <p>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p> <p>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p> <p>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p> <p>4.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p> <p>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p> <p>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p> <p>5.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p> <p>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전문회원 5인 이상의 추천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p>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p>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p>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p>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p> <p>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p>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p>1.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p> <p>1) 회장</p> <p>2) 차기회장</p> <p>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p> <p>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p> <p>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 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p>
제 9 조 (감사의 구성)	<p>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및 임무)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차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일부 이사의 경우 임기를 1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하며, 감사의 결원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 의 원 회 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 의 원 회 의 임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 의 원 회 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산 보고 2. 사업 보고 3. 감사 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정족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2. 재적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재적이사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3. 표결시 출석을 위임한 재적이사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이사회 구성원 중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결 과정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인준에서 회피해야 한다. 6. 제척된 구성원이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23 조 (이사회 기	<p>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1.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